



서울지방법원

2000. 3. 23. 판결선고	인
2000. 3. 23. 원본영수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99나8320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김 상 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 승 수, 이 상 훈

피고,피항소인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정 길

소송수행자 김 현 중, 이 명 신

피고(선정당사자), 안 명 한
피항소인

변 론 종 결 2000. 3. 2.

제1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1999. 9. 28. 선고 99가소27571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



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대한민국, 피고(선정당사자) 안명한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9. 18.부터 2000. 3.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심, 2심을 합하여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 피고(선정당사자) 안명한 및 선정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안명한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9.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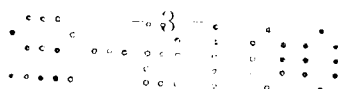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안명한은 성남 남부경찰서 상대원2동 파출소 소속 경찰관(경장), 선정자 양승호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경장), 선정자 조수빈은 같은 파

출소 소속 경찰관(순경), 선정자 강구천은 성남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경장), 선정자 정광률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순경), 선정자 이호준은 같은 파출소 소속 의무경찰(일경)로 근무하던 자들이다.

나. 피고 안명한, 이호준은 1998. 9. 18. 16:1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 소재 성남 남부경찰서 상대원2동 파출소 앞 도로상에서 원고가 그곳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을 적발하고 단속하게 되었는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원고가 당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자신의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발행의 고용보험업무지원요원증을 제시하자 위 요원증을 믿지 못하겠다는 원고를 파출소로 연행하려다가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에게 체포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그의 양팔을 붙잡고 위 파출소까지 약 15미터를 강제로 연행하였다.

다. 같은 날 16:30경 위 파출소에서 소내 근무를 하던 조수빈은 위와 같이 연행되어 온 원고를 인계 받아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고용보험업무지원요원증으로 원고의 신분을 확인하고는 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계속 훈방을 요구하면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자 원고에 대하여 즉결심판에 회부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귀가를 요구하는 원고를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라. 같은 날 19:00경 피고 안명한, 양승호는 위 파출소에서 귀가를 요구하는 원고를 위 양승호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성남 남부경찰서까지 호송하여 즉시보호실 당직근무자인 위 정광률, 강구천에게 인계하고, 위 정광률, 강구천은 원고에게 신원보증인이 경찰서에 나와 원고의 즉결심판 출석을 보증하면 귀가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신원보증인을 출석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즉시보호실 유치장 안으로 밀어 넣고 문 밖에서 출입문을 잠궜 그때부터 다음날 09:50경까지 약 14시간 동안 그를 감금하였다.

[증거] * 부합증거 : 갑 제1호증, 제8호증의 1(을 제5호증의 2와 같다.), 3, 7, 11 내지 13(갑 제8호증의 3, 7, 11 내지 13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제9호증, 제12호증,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1(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당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 배척증거 : 갑 제2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4 내지 6, 을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제4호증의 1, 2, 제6호증의 5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3, 7, 11 내지 13, 을 제1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안명한, 이호준의 불법체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대하여 당해

인은 거절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위 안명환과 이호준이 원고를 파출소로 데려가려는 행위는, 이를 위 법조 소정의 임의동행으로 본다면 원고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인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억지로 동행한 행위를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현행범체포로 본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14조에서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범한 도로무단횡단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14조 제1호,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이 경미사건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자신의 사진이 첨부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고용보험업무지원요원증을 안명환, 이호준에게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시 안명환 등은 위 파출소와 교신을 할 수 있는 무전기를 가지고 이를 이용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면 파출소에 근무하는 근무자를 통하여 인적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고용보험업무지원요원증을 제시한 원고에 대하여 그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서 체포한 행위는 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경미사건의 현행범인체포로서의 적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양승호, 안명한, 조수빈의 불법감금

원고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한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수령을 거절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118조 제3호, 제120조 제1호에 의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당시 즉결심판은 다음날 10:00에 개정될 예정이었으므로 귀가를 요구하는 원고를 귀가시키지 아니한 채, 위 파출소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위 양승호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성남 남부경찰서로 호송한 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원고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경찰관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감금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당시 원고에게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소정의 보호조치를 취할 사유도 없었음이 명백하다.).

(3) 정광률, 강구천의 불법감금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법률에 정하여진 구금 또는 보호유치요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즉결심판 피의자라는 사유만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고, 경찰 업무상 그러한 관행이나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인신구속을 행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참조), 귀가를 요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을 데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즉심보호실 유치장에 구금한 정광률, 강구천의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이라고 할 것이다.

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 안명한 및 선정자들과 피고 대한민국(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체포·연행된 경위, 원고가 경찰서 즉심보호실 유치장에서 약 14시간 동안 불법구금된 점, 한편 원고도 도로교통법위반죄를 범하고서도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수령을 거절하여 스스로 문제를 확대시킨 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금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1998. 9. 18.부터 피고 등이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0. 3.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 등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3. 23.

재판장 판사 강용현 _____

판사 강상진 _____

판사 정승규 _____

선 정 자 목 록

1. 안 명 한

2. 양 승 호

3. 조 수 빈

4. 강 구 천

5. 정 광 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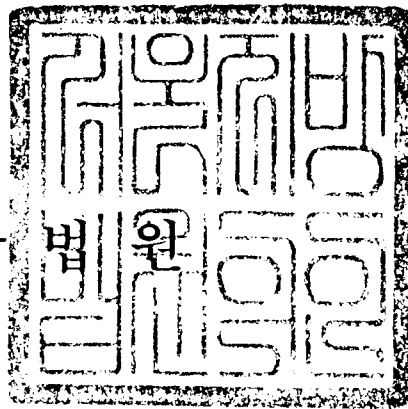
6. 이 호 준



정 본 입 니 다.

2000. 3. 24

서 울 지 방



법원사무관 박 호

